#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0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서지영·서천호·조은희

이헌승 · 한지아 · 정성국

김민전 · 김희정 · 윤영석

김소희 · 최은석 · 박충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 11 및 제30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1(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 2.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

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 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12(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 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

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0조의11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 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 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0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 2.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5. 제30조의1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6. 제30조의1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

장한 자

③ 제30조의1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11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11(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학교를 설립·경 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신고한 경우 2.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보호자 및 교직원 전원의 동

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 2.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 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것
-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 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신 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 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12(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의11제 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 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 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 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

   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

- <u>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u> <u>경우</u>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경우
- ②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느 된다.
- 1. 제30조의11제1항의 설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는 제30조의11제1항의 영상정

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 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 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 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10 11				
67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

\_\_\_\_\_

전용하다

- 1. 제30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 2.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30조의1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68조(과태료) <u><신</u> 설>

① (생 략)

행위를 한 자

- 6. 제30조의12제2항제2호를 위 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 나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저장 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 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③ 제30조의1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11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 한 자
  - 2.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
     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